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2단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공고

■ 본 임차인 모집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본 주택은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10년)임. ■ 본 주택은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5.10.13)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명의 청약 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음. 지정된 계좌 이외에 현장수납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 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12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27744호(2025.10.01)로 임대주택공급 신고 필

■ 공급위치 :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용지 A2블럭 (서구 가수원동 산16-11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8~25층 4개동 총 330세대 중 장기민간임대 66세대 및 부대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	모델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총공급
구분	스탠려 -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084.9879A	84A	84.9879	25.2870	110.2749	61.8021	172.0770	54.9296	32
장기일반	084.9983B	84B	84.9983	26.3471	111.3454	61.8096	173.1550	54.9363	18
민간임대	084.9939C	84C	84.9939	26.2315	111.2254	61.8064	173.0318	54.9335	16
					-Lali				cc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임차인 모집공고 상 주택형(m)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법정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 x 0.3025 또는 공급면적(m)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m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임차인 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시공되며, 홍보물 등으로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 후 청약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형	084.9879A	084.9983B	084.9939C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84C		

					계약금(10%)		(10%)	중도금(48%)			잔금(42%)
주택형 약식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차(16%)	2차(16%)	3차(16%)	입주지정
표기							30일 이내	2026.02.26 2026.05.28 202	2026.08.27	기간	
	32	201동 1,2호 202동 3,4호 203동 3,4호 204동 1,2호	2층	1	335,000,000	5,000,000	28,5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40,700,000
84A			3층	2	345,000,000	5,000,000	29,5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44,900,000
04A			4층	3	355,000,000	5,000,000	30,5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49,100,000
			5~15층	26	365,000,000	5,000,000	31,5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53,300,000
	18	201동 3호 202동 2호 203동 2호 204동 3호	2층	1	330,000,000	5,000,000	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38,600,000
			3층	1	340,000,000	5,000,000	29,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42,800,000
84B			4층	1	350,000,000	5,000,000	3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47,000,000
			5~15층	14	360,000,000	5,000,000	31,0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151,200,000
			16층 이상	1	1 370,000,000 5,000,000 32,000,000 59,2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55,400,000		
	16	201동 4호 202동 1호 203동 1호	3층	3	345,000,000	5,000,000	29,5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44,900,000
84C			5~15층	12	365,000,000	5,000,000	31,5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53,300,000
		204동 4호	16층 이상	1	375,000,000	5,000,000	32,5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57,500,000

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의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대조건은 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암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암대로,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대출이자 대납금액 등을 암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임차인 모집공고 상 주택형(m')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이표시법정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 x 0.3025 또는 공급면적(m) ÷3.305

※주택형의 구분은 임차인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및 보증금 조정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으로, 임대기간 종료후의 분양전환에 대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임의 결정하며, 임차인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임차인과 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일 2년 이내 신규 또는 갱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은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이 정한 분양전환시기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에대해 임차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향후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임차인의 변심 또는 결격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된 경우 계약서 약관등에 따라 위약벌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월임대료 미납액,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 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자가 정하는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단, 퇴거시 반환하며, 관리비 선수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

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사용검사 전)은 임대보증금 보험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 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근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의거 최초 임차인 모집일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아래표의 부담 비율로 분담 납부합니다. (단,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임대계약기간
보증대상	임대보증금 전액 (단, 사용검사 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한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보증 수수료율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율에 의함
보증 수수료	보증금 X 보증수수료 율 X 보증기간(임대사업자가 75% 부담, 임차인이 25% 부담하며, 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납부방법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부담분은 입주 시 2년 선납으로 처리하여 납부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

상기 임대보증금은 사용검사 후 임대기간 동안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임대주택에서 장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우선 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임대차계 약 이외에 별도의 확정분양계약 등에 따른 분양대금(또는 매매예약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대상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모집공고상의 임대보증금만을 약관에 따라 보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관리비 등이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청약자격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5.10.13)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명의 청약 불가)
필요서류	・ 청약신청서 (임대공급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해당일 10:00~17:00 까지 신청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5.10.1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동호수는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공급자격조건의 판단 기준입니다.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5.10.18.(토) 10:00~17:00	2025.10.19.(일)		
방 법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임대공급사무실 방문 접수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임대공급사무실 게시		
장 소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임대공급사무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050, 이레리치빌딩 4층 406호)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임대공급사무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050, 이레리치빌딩 4층 406호)	당첨자 발표일,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식을 사전 고지하 고, 당첨자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임대사업자 또는 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포기로 인해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일 이후 임대사업자가 선착순 등에 따라 임의공급합니다.

○ 1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 계약일정 및 장소		
계약체결 일정	계약체결 시간	

2025.10.20.(월)	10:00~16:00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임대공급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050, 이레리치빌딩 4층 406호)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1회차 계약금 (최초 계약 시)	우리은행	1005-786-230904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2회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ㅁㅌ자이그 !! 이렇이렇네 바ㄷ!! 도 중소 이렇스이고 기계됩니기 내려 !!다! 에비 그어도 101중 중기도이 겨오 그 2010101중기도\							

무통장 입금 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 호수, 이름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201동 101호 홈길동의 경우 → 2010101홍길동)
 상기 납부계좌 및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우리은행 1005-786-230904, 예금주: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동・호수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호수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정된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인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되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연체가산이자율 연 3.00%를 합산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본인 계약 시

위임장(계약장소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배우자 포함)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5.10.13)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반드시 "본인 전체 주민등록번호"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부동산임대차 계약 위임용)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당첨자로 선정되었어도 계약 시 서류 검토에서 부적격(신청 자격 미달)으로 판명이 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공급 신청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및 동법 시행령 위반 및 타인명의로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임대사업자가 선착순 등의 방법에 따라 임의공급합니다. •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위약벌로 위약금을 공제하며, 입주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 •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에 따른 위약금을 위약벌로 부과되고 임차인 또는 전대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임차인의 변심 또는 결격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된 경우 계약서 약관등에 따라 위약벌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본 주택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대출알선의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자가 향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경우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소득 등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임차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전세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 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향후 중도금 대출 알선 시 중도금대출이 가능한 세대에 한해 임차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로 합니다.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임차인이 직접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후불제 조건이 불가하므로,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이자의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후 입주지정기간에 따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이며,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액(이하 "대납이자액"이라 한다)은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임자인이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 경과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악정 기간은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위탁자가 대납하지만, 입주개시일로부터 대출상환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해제(해지)일 즉시 위탁자가 대납한 대납이자액을 변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정부정책・금융기관・임대사업자 및 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사업자 및 위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인 신용 및 조건, 소득금액, 주택수에 따라 대출 알선 조건의 변경 또는 대출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금2차분까지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및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임차인 책임과 비용으로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의 담보 또는 임대보증금의 담보를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임차인은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액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상기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인 보증의 갱신 또는 임대차 갱신 등의 사유인 경우는 그 시점에 임차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등을 고지하고,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고지한 계좌로 기한내 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 본 주택은 본 공사 시 전 세대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전평형 4곳으로, 84A형의 경우 주방에 접한 침실은 미설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본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4항에 따른 허가)

・본 주택은 본 공사 시 전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및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1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민편의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카페, 주민회의실, 남/여 독서실) 등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사항에 따라 단지내 총세대수의 20%인 66세대에 대해 임대공급을 하게 되고, 형별, 층수별 분산배치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정기간 운영하게 됩니다. 본 아파트는 2023년 07월 21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기준, 규정 등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기준, 규정 등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시의 기준, 규정 등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 소급, 변경 적용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임대공급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3/gwanjeo)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학교,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ㆍ허가 협의 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임차인모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경계에 투시형 펜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고,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구간, 재질, 규격,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위치, 도로, 공원,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임대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본 아파트의 단지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 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계약체결 후 임차인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각 세대의 동별, 향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명칭, 브랜드 로고,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조경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로부터 임대보증약관 등 보증내용(임대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본 임차인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사업승인도서 상의 가구 치수는 설계 기준 치수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종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설비환기구), 옥외 시설물,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문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용 기골로 용 중기교용으로 구가 [전문가](파마)에 파가가 모습하고 다음하고 보고 다음하고 있는 경기로 등을 받았다. 다음하고 있는 경기로 가장하고 기급하고 하는데 다음하고 다음하고 보고 있는데 보고 본 추택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임대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주택보유수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공급사무소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임대관련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 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공사시 마감계획은 "조경석쌓기,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여부와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조경선,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교통영향 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경관조명,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포장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통신시설물,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의 비용은 납부시기 부참하여자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에 의거 단지 내 소방관련 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및 부대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을 무료되다 건입에게 및 공용제에도 모용하고 등장 및 어떤으로 단단 모음이 골요를 무 제되다면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내에서 외부 조망시 시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주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내에서 외부 조망시 시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지상주차장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었을 경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7층 및 작후벽에 인접하여 D/A(설비환기구)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 • 조경 • 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이파트의 미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사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Ⅷ, 최대 유효 지반가속도 0.221g입니다.

는 단지 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문주 및 주차장출입구와 인접한 각 동 저층부 세대는 해당 구조물들로 인해 조망,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엘리베이터의 마감재료(금속, 유리 등) 특성상 반사로 인해 단지내 통행로 및 일부 세대창문에서 외부 조망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의 주변의 농경지 경작으로 인한 악취, 해충, 농약살포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차단시설은 없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 시설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대지지분은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 확정측량 진행하여 등기할 예정입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 잔금 등의 완납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사용검사 후 입주 시 보존등기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세대원 전출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ㆍ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ㆍ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항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휘트니스센터,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는 어머니는 데마는 그는 가입에 에너 및 단당으로 끌리에다. 이글 이끌 이 중에 들어 있습니다. 아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또는 환기가 용이한 시설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주체에 따른 입주민들이 자체적 유지, 관리운영 하여야 합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소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시 배포하는 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임대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느니공되는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납구에당 시기는 등당에 따다 단당할 수 있는 가는 시기는 수후 개발 등로입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갑"(또는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 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급안내 및 홍보자료 ㆍ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는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임대공급사무소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임대공급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임대공급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및 교통, 학교배정에 대한 내용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종 양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및 교통, 학교배정에 대한 내용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키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시설에 대한 U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정 될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동방고등학교의 우오수 연결 배관이 단지를 통과하며, 공공시설로 임의 폐쇄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우수저류조를 단지내에 설치하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총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도면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야간조명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허가도면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공사시 드롭존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도로선형, 주정차 가능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드롭존은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도보 및 차량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한 동이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 수목 및 시설물의 위치, 포장 범위,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실외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및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보관소,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종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 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이 설치될 경우, 시설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주택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면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단지 외부 사이에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절치기 그렇게 세일, 역장 로 작성은 단생을 두 처합니다.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문주, 경비실, D/A(설비환기구), 외부 엘리베이터/계약된 등 외부시설물의 행정 기자 등은 기능 및 외관 개선을 위해 인허가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될 예정으로 페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와 연결되는 계단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상층 출입구는 출입구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종류: 경비실, 관리사무소 1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민편의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카페, 주민회의실, 남/여 독서실 등)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부대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축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본 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 건립되므로, 입주 후 부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주동과 인접할 경우 해당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 및 전달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단지 및 지하주차장 배치에 따라 주차장에서 각 동별 이동시 이동 통로가 다른 구간에 비해 길게 형성되는 구간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및 수경시설을 포함한 외투 ' 짜리구'다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내 •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및 지하2층 차량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3m, 주차공간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2층 택배차량 통행구간에는 법적 기준층고(차량 통행구간 유효높이 2.7m)를 적용하였습니다.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지하 2층의 택배차량 통행구간 외 구간은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차량 통행구간 유효높이 2.3m)합니다.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간 돈 치산촌에 엘리베이터 기계신 설치로 이해 일보 소은 지독이 발생한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소유의 전기설비,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등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참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추가적인 차폐시설(지붕, 루버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 조망권 간섭, 시야 차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측벽 포함)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을 훼손하고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 <u>식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u>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옥외안테나 - 해당없음 / 중계장치 - 지하1층 휀룸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 수 대비 대수 및 인승, 속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동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확보대수는 433대로 세대당 1.31대이며, 법정주차대비 131.21%입니다.

생활지원센터 및 기타 부대시설(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은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 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등 각 시설 설치 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실시계획인가 등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 공공시설,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도로, 경관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쌓기, 토목옹벽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곽의 마감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구조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단지 및 생활편의 시설, 도로의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지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 생태의 인당된다. 기본 등 기본 학생 등 기본 학생인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푸크 라이가 가는 푸포크 계속에 크는 푸른 개혁 계속은 같은 현의가 기는 푸른자랑으로 자십 파세크 피스와 크로 하는데 가입하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결,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등 발코니에 환기시스템 (장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장비)이 설치되는 실외기실의 천정에는 천장 마감이 없이 노출시공 됩니다. 는 전기시스 R (8박)에 들자되는 물과 만들어 단점에는 단점에는 단점에 따라 모르게 하다고 보고 되었다.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 (급/배기용)는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되며,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당 작품 성도의 내가 있는 다른 다음 가는 얼마 가지를 가고 있는 것으로 가지를 가고 있는데 되었다.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옹벽, 조경석 및 기타 구조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감도 등에 표현된 주동 필로티 출입동선에 위치한 캐노피는 통행로 변경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옹벽 및 조경 등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ㆍ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캠핑시설, 부대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 인정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 근린생활시설 생활페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소음 및 냄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 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 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ㆍ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시각적 간섭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본 아파트는 주동 배치로 인접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ㆍ 저층 일부 세대는 부대시설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 저층 일부 세대는 근생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구 인근 세대는 차량 진출입 및 드롭존, 키즈스테이션으로 인한 소음, 조망 및 진입동선 제한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또는 실외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ㆍ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내) ・ 세대 현관에 스마트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세대 조합, 층차이 등의 이유로 세대 앞 엘리베이터 홀 면적(공용공간)은 동,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에는 기본형 마감자재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에도 할지되어 돼 에데당 표시 시장되어 시장시 되지가 건강 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세대와 필로티 및 부대시설의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완강기 설치로 인한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 철거, 제거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습니다.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능에네의 되먹이답에 들시에 따라 되고 영호는 다고 국고 및 인성을 수 있으며, 국제가 인성을 수 있습니다.

•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굉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일부 비내력벽 (침실,욕실,PD, 발코니 등의 부분)은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주방가구에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주방상판에 가스쿡탑 사용을 고려한 원형 타공이 시공되며, 미사용 시 고무캡 마감재가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됩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전 타입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l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스마트홈앱을통해연동가능한삼성전자생활가전제품은 9종가전에어컨,냉장고,세탁기,에어드레서,건조기,로봇청소기,공기청정기,식기세착기,SmartTV/이며,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있습니다.제공기능도 당사 및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시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당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배기관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노출 설치되며, 이에 따라 마감씨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살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노출 설치되며, 이에 따라 마감씨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일부 동 2층, 3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 용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보일러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탁기, 건조기 및 김치냉장고 등 가전류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 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발코니2) 상부에 상부층 배수배관이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다용도실의 천장 높이가 낮아질 수 있으며,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올려 사용할 경우 유지보수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타입의 세대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및 루버 등 열린부위가 없도록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ㆍ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입주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납부수 세대 네 그 공기부 중 그러시되 근단은 단테니어 공시 그는 에서프로 하게, 근로서 예공 제고서로 문극 바다라, 에클 이용에서 않글지 글공에는 제근시용에 대에서 자공자는 미국자표가 따답되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투전부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로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 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임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항공인 자세(다들 등)의 경우 자세 자세의 품결정 하시의 본단는 K3 기눈에 의합되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학생배치는 대전가수원초등학교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기존 학교군에 분산 배치계획입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가스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 될 예정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장소에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인이 신한자산신탁(주)로 되어 있으나, 임대기간 개시일 이후(준공일 이후) 본 건물에 대한 신탁이 해제(종료)될 경우, 위탁자인 ㈜용진디앤씨로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변경계약체결 등에 응해야 합니다. • 현재 버스노선 및 버스 운행 횟수 미확정으로 본 사업지 준공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버스정류장 설치위치가 결정될 예정으로 추후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VII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VAT 포함, 전체 330세대 및 근생포함 기준)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 대경기술단 ㈜ 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화엔지니어링 ㈜ 주신엔지니어링 214,170,000원

메르칼리 진도 등급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일금 일백삼십팔억사백만원정 (사용검사 또는 해당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 01282025-704-0090000호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13,804,000,000)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함.

기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④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부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공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공사] 주택도시보증상사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병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O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 촉진 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 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3. 보증채권자가 주택입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인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〇 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보증약관 제3조)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야합니다.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 이후부터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〇 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보증약관 제13조)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상의 권리 또는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대우건설 ㈜ 용진디앤씨 110111-3543801 160111-0511132 110111-21378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59번길34, 2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 관리형토지신탁 본 임대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겸 위탁자인 ㈜용진디앤씨에게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 및 시공사 ㈜대우건설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조의 특약 사항은 임대차계약의 다른 일반조항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본 사업은 시행자인 ㈜용진디앤씨가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용진디앤씨이고, 신한자산신탁㈜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2. [임대보증금납부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3. F본 임대차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 하자 포함)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용진디앤씨 및 시공자인 ㈜대우건설이 부담하며, 임차인는 신한자산신탁㈜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용진디앤씨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제3자(임대사업자,매수인 등 일체포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임대계약 상 임대인(임대사업자) 지 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용진디앤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 5.「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임대차 관련 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등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다.」 6.「임대차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임대인 또는 공급자인 신한자산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신한자산신탁㈜가 임대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한자산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한자산신탁㈜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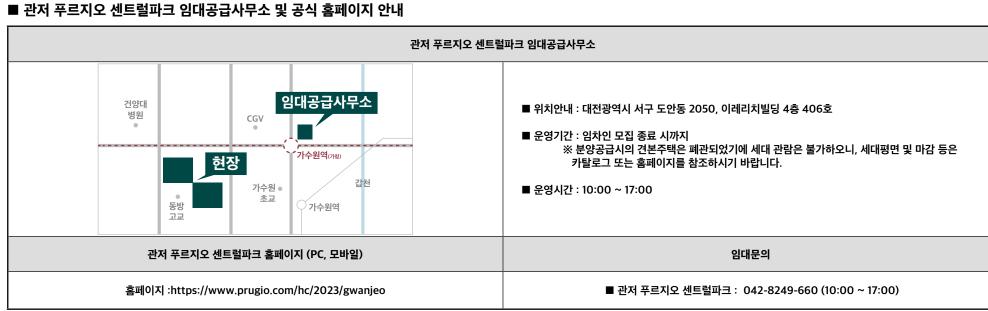
7.「임차인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임차인 간의 임대확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확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서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전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항>

ㆍ당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은 대전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현황은 현재 계획을 반영하여 표현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시개발사업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당 사업지가 속한 대전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소공원)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ㆍ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구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구역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준공후 확정측 량한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짜리 미만에서 절삭하며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8. 「임차인은 위 공급(임대)목적물의 대지가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ㆍ형사상의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임대공급사무소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임차인 모집안내는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임차인 모집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